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8가단5039160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강민성

피 고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담당변호사 이세영

변론 종결 2018. 9. 17.

판결 선고 2018.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3,257원 및 그중 52,944,6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4. 12.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건축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12. 19.부터 2016. 2. 15.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532,180,000원)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15. 2. 16.경 '가.항 기재 건설공사의 지수변동율 분석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니, 기준시점(2014. 12.) 이후 기성의 개산급 처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2015. 5. 11.경'위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이 물가지수 예상조정을 -3.36% 비율에 의한 감액조정 대상임을 통보하며, 이에 따라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상조정을 반영하여 개산급 처리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8.경 및 2015. 11. 24.경 두 차례에 걸쳐 D에 가.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에 따라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반영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15. 11. 24.경 D에 통보한 위 하도급계약의 조정대상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일	기준일	달초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기 지급금액 (기준일 누계)	계약금액 (조정대상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적용율	조정금액
14.12.19	14.12.31	4,838,000,000원	141,300,000원	4,696,700,000원	-1.24%	-58,239,080원

다. 한편, D는 2015. 12. 22. 원고와 사이에 가.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5,39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 및 이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532,180,000원, 보증기간을 2014. 12. 19.부터 2016. 2. 15.까지로 하여 피고가 D의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12. 24. 피고로부터 보증기간을 2016.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 및 추가보증금액을 7,480,000원, 보증기간을 2015. 12. 22.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각 추가로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여(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총 보증금액은 539,660,000원(= 532,180,000원 + 7,480,000원)이 되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증책임)

1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들과 관련하여 보증기한내에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 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외화보증금액이 병기된 경우에는 원화보증금액을 적용합니다. 이하 '보증금액'이라 합니다)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청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1. 보증서 사본
2. 계약관련 서류(내역서 포함)
3. 기성관련 서류(기성금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계약해지 및 타절정산 관련 서류
5. 실제 손해액 입증 서류
6. 기타 조합이 보상심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제8조 (보상범위)

1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심사자료 포함)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마. D는 2016. 7. 11. 원고에게 '당사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다.항 기재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조정금 58,239,080원을 포함하여 5,16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8.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시공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68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공사기간을 2016. 8. 2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경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2016. 11. 3. 위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539,6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중 416,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5,338,360,920원(위 하도급계약의 최종 계약금액 5,396,600,000원 -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조정금 58,239,080원)이고, 원고가 D에 지급한 기성금은 5,166,700,000원이므로, D가 정상적으로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171,660,920원(공사대금 5,338,360,920원 - 기성금 5,166,7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D가 위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위하여 E에 공사대금 687,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15,839,080원(687,500,000원 - 171,660,9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위 금액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원고가 보전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46,894,46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실손해액은 468,944,600원(515,839,080원 - 46,894,461원, 100원 미만 버림)이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4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52,944,600원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인 2016. 11. 3.로부터 60일 이내인 2017. 1. 2.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위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2017. 4. 1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4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1. 3.부터 2017. 4. 1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48,657원(416,000,000원 × 6% × 10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추가 지급을 구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0,193,257원(미지급 계약보증금 52,944,600원 + 기지급계약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248,657원) 및 그중 미지급 계약보증금 52,944,600원에 대한 2017.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보증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계약보증금 52,944,6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대금조정 규정('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에 따른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2조 제2호의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①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서(갑 제7호증의1)에는 '변경 전 계약금액:

4,9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변경 후 계약금액: 4,6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감액: 2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여공사 금액은 위 '감액'으로 기재된 2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실손해액은 E에 지급한 공사대금 687,5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25,000,000원과 위 잔여공사 금액 209,000,000원의 차액인 416,000,000원이 되는데,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41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위와 같이 원고의 실손해액은 416,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2017. 4. 18. 계약보증금 416,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제출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금 지급기일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하도급계약기간 중 D가 2016. 7. 11.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대금조정 규정('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에 따른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2조 제2호의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율을 적용한 조정금액에 따라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반영할 것을 통보하였고, D의 공사포기에 따라 2016. 7. 11. D와 사이에 위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조정금을 반영하여 위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위 하도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D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D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

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1조 제2항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D가 2016. 7. 1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포기 당시까지 위 공사에 관하여 D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5,166,7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16. 8. 24. D가 시공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를 위하여 E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68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공사기간을 2016. 8. 24.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D에 남은 미지급공사대금 171,660,920원[=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5,338,360,920원(위 하도급계약의 최종 계약금액 5,396,600,000원 -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조정금 58,239,080원) - 기성금 5,166,7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나, D의 귀책사유로 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부분 공사를 위하여 추가로 468,944,619원(이 사건 잔여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87,500,000원 - 위 미지급 공사대금 171,660,920원 - 위 잔여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46,894,461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액될 예정이었다거나, 위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위 잔여 공사계약에 추가되었거나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468,944,619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으로서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D가 정상적으로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경우의 잔여 공사대금이 이 사건 합의서에 '감액'으로 기재된 209,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468,944,619원에서 기지급한 계약보증금 41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944,619원 중 원고가 구하는 52,94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지급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1. 3. 원고로부터 보증금 청구문서를 접수하였는데, 2017. 4. 18.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4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실손해액이 41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같은 금액상당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위 보증약관 제8조 제1항 단서의 '제출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금지급기일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손해액이 416,0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출된 심사자료에 대해 이의가 있어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보증금 416,000,000원에 대한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인 2016. 11. 3.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 1. 3.부터 그 지급일인 2017.4.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48,657원(416,000,000원× 6% × 10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193,257원(=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증금 중 미지급금액 52,944,600원 + 기지급된 계약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액 7,248,657원) 및 그중 52,944,600원에 대하여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인 2016. 11. 3.로부터 보증금 지급기일인 60일이 경과한 2017.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조국인